

4. 法人稅法施行規則中改正令

財務部令 第1835號 1990年 10月 22日 公布

법인세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상품등의 전시·판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것(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1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상품등을 전시·판매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제18조제3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차고용 또는 주기장용 토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나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 또는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또는 주기장용 토지(중기 정비업의 작업장과 자동차 또는 중기의 정비·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

치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의 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또는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사업허가기준상의 주기장·작업장면적의 1.1배 이내의 토지(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용토지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의 토지)

제1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임야·조림용 묘포장.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조림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묘포장토지중 당해 영림계획상의 조림면적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그 지목이 전·답 또는 임야인 것(도시계획구역안의 전·답 또는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제18조제3항제5호나목 본문중 “당해 사업연도중 최고사육두수에”를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중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두수에”로 한다.

제18조제3항제6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다목본문중 “체육시설업(경기장운영업을 포함하며 골프장업을 제외한다)”을 “체육시설업(경기장운영업을 포함하며, 골프장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중
별표 9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 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법인 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당해 기업집단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다른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수전용체육시설로 보며,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선수전용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2) 운동경기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별표 9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

나.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

(1)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별표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

로서 동표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

(2)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별표10의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직할시·시·군과 그와 인접한 시·군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 이 경우 종업원의 수는 그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시·직할시·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별표10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동일 시·군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당해 기업집단의 각 법인의 종업원의 수를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10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제18조제3항제9호단서중 “사업용부동산(스키장·온천장 및 수영장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0(스키장 또는 수영장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하며, 정부가 인정한 외국인투자의 조건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는 자가 그 외국인 투자기업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제18조제3항제18호중 “하치장용 토지”를 “하치장용 토지(건축법에 의한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사원용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

2.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부동산
외에 당해 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
하는 부동산

제1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 및 제13호 내지 제17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하 이호에서 “사용제한 부
동산”이라 한다)으로서 그 사용이 금
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거나 사용제한 부동산으
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
부터 3년이내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
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토지개발공사에 당해 부동산의 매각
을 의뢰(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
에 한한다)하였으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 그 3년
이 경과된 날부터 5년(이하 이 호에
서 “유예기간”이라 하며, 매유예기간
내에 다시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당해
유예기간내에 2회이상 유찰된 경우
에 있어서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

동산

1의2.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
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
산(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과 문화재보호
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
동산

13. 석유·가스 기타 화재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그에 대
한 제3항제2호의 기준면적이 그 시
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 또
는 사업의 인가·허가·면허등의 조건
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

14.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
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농
경지·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
역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
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

15. 광업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
(제3항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
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

16.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17.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제3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에 경과되기 전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제18조제5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제10항(종전의 제9항)제3호 후단 중 “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특수작물 등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농경지 등의 면적 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 배 이내의 농경지 또는 목장용지에 한하여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항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건설기간 중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제18조제13항 내지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장입지기준면적율·용도지역별적용배율 및 용적률은 건축허가 또는 공장 등록당시에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률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⑭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체육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 제3항제6호가목 (1)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선수전용체육시설을 판정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선수전용체육시설이 2이

상인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것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한 법인이 보유하는 선수전용체육시설
2.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는 선수전용체육시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선수전용체육시설
⑯제3항제6호나목(2)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체육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순서에 따라 별표10의 기준면적에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⑯제3항제6호나목(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이 기준면적에 미달하거나 이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목(2)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공장 또는 광산이 소재한 시·군과 동일 시·군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의 수를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동목(2)의 규정을 적용한다.
재무부령 제1818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중 “소유명령”을 “소유명령 또는 조립명령”으로, “산업비립용”을 “산업비립용 또는 조립용”으로 한다.

[별표8] 및 [별표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제10호·제18조제3항제5호나목·제6호가목(1)·제6호나목·제18호 및 제18조제10항제3호 및 별표8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원용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부동산에 관한 특례) 1991년 12월 31일 현재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을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로 보아 제1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스키장들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시설의 일부로 스키장·수영장 또는 온천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휴양시설업

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제9호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다.

[별표8]

축산용토지 및 건물의 기준(제18조제3항제5호나목관련)

구 分	사업별	가축두수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 포 (헥타르)	비 고
			축 사 (제곱미터)	부대시설 (제곱미터)		
한 우 (육우)	사육사업	1두당	7.5	5	0.5	말·노새·당나귀 사육의 경우를 포 함한다
한 우 (육우)	비육사업	1두당	7.5	5	0.2	
유 우 양	목장사업	1두당	11	7	0.5	
사 슴	목장사업	10두당	8	3	0.5	
토 끼	사육사업	100두당	66	16	0.5	
돼 지	양돈사업	33	7	0.2	친칠라사육의 경 우를 포함한다.	
가 금	양계사업	5두당	50	13	—	개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밍 크	사육사업	100두당	33	16	—	
		5두당	7	7	—	여우사육의 경우 를 포함한다.

[별표9]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제18조제3항제6호가목관련)

1. 직장운동경기부전용체육시설

가. 기준면적

(단위: 제곱미터)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구분	기준면적	구분	기준면적
축구장	11,000	○ 핸드볼·배구·농구·탁구· 배드민턴·복싱·유도·검도· 태권도·펜싱·체조·역도· 씨름·레슬링·볼링	
야구장	14,000		
럭비장	9,000		체육관바닥면적 800
필드하키장	6,500		
테니스장·연식정구장	650		
미식축구장	7,000	○ 수영·수구·다이빙장	체육관바닥면적 1,000
승마장	6,200		
사격장	4,000	○ 아이스하키장	
궁도장	7,100	○ 피겨스케이트장	체육관바닥면적 1,800
기타	3,000	○ 롤러스케이트장	

나. 적용요건

-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각종 경기정원 이상이어야 한다.
-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규격 기타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 적용요령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는 실내

체육관의 건축면적에 제18조제3항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 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에 한하여 부속토지로 인정한다.

(2) 축구·야구·럭비·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 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실외체육시설의 면적기준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경기종목의 기준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 (3)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바닥 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 (4)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 경기부를 두고 있는 법인이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를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 (5)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

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2인마다 483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2. 운동경기업 법인의 훈련용 체육시설

가. 기준면적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종 목별기준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

나. 적용요건 및 적용요령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이유 ▶

기업의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의 운용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휴양소 등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차입금의 규모에 따라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그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상품 등이 전시·판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추가함(제11조제4항 제10호).

나.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이자 및 유지·관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그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는 한편, 법인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1) 종전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었던 조립용 묘포장중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조림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묘포장용 토지로서 당해 영림계획상의 조림면적의 100분의 1에 해당하고 그 지목이 전·답 또는 임야인 토지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4호나목).

(2) 종전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법인 또는 이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법인이 속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의 다른 법인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이

를 선수전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도록 함(제18조 제3항 제6호 가목(1)단서).

- (3)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외에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수 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일정기준면적 이내의 선수전용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이를 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도록 함(제18조 제3항 제6호 가목(2)).
- (4)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의 경우 공장 또는 광산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과 그외의 종업원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을 구분하여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은 당해 사업장에 소재하는 시·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기준면적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도록 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각 법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모두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도록 함(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
- (5) 부동산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기준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있어서 고급주택외의 주택은 수입금액기준비율에 관계없이 이를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도록 함(제18조 제3항 제11호).
- (6) 법인이 소유하는 사원용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 추가함(제18조 제3항 제19호).
- (7) 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용제한 부동산의 경우 종전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한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외에 사용제한부동산중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등에 당해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여 매각하려고 하여도 2회이상 유찰되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일정기간동안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8조 제4항 제1호).
- (8) 석유·가스등 위험물의 저장·보관·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시설물 주변 안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8조 제4항 제13호).

(9)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중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 ·면허등 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여부의 판정유예기간내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건축허가를 제한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판정유예기간외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에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8조제4항제17호 및 동조제5항).

〈재무부 제공〉